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이기에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며 시력과 관계가 거의 없는 눈꺼풀 장애를 시력이 존재하면 장애로 인정하고 시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장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사청구하였다.

결정기관에서는 안구의 장애는 한 눈이 실명되었으므로 제8급 제1호에 해당되고 눈꺼풀 장애는 눈을 뜬 때 동공를 완전히 덮고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제12급, 제1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하는 장애가 남았으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적용하면 장애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종합노동법률사무소 (031-877-7582-3)

Q 한눈이 실명된 자가 같은 눈에 눈꺼풀 수술에 따른 결손 장애가 남는 경우 준용 7급을 인정할 사례는?

A 상병명 '좌안 상안검열상, 공막열상, 홍채이탈'으로 요양료후 좌안 부안구(의안) 상태이고 좌측 눈꺼풀 수술에 따른 결손장애가 남는 경우 원청인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한눈이 실명된 자'로 인정하여 제8급 제1호로 적용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강남성모병원에서 눈꺼풀 수술을 받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구제거 및 성형수술을 받았고 주치의 소견은 좌안은 부안구의한 상태이며, 상흔이 고정되어산재종결 요함이라고 밝혔다.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좌안상, 좌안 부안구(안구제거 후실명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재자는 환자의 상태를 눈을 완전히 감아도 눈이 검은 동자가 보여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애가 남았으나, 실명된 눈의 눈꺼풀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체내에서의 술의 분해과정

술이란 알콜성분이 1도 이상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말하는데 그 주성분은 에틸알콜입니다. 이 에틸알콜은 주로 위에서 70~80%가 흡수되고 나머지 20~30%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속으로 들어가서 장이나 조직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혈액속의 알콜농도가 높아지면 뇌척수액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필름이 끈긴다는 기억장애는 이것으로 유발됩니다. 이는 알콜중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콜을 분해하는 효소는 알콜탈수소효소가 있는데 이것은 간장에만 존재하며, 그러므로 간장이외의 조직에 퍼져 있던 알콜은 다시 혈액을 통해 간장으로 들어가서 알콜탈수소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도 변화 됩니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118hanbang.co.kr

술(알콜)해독 ①

1. 우리의 술문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최근 현대사화는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면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술을 대접하고, 사업상의 부탁을 할 때에는 우선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술상무'라고 까지 합니다. 또 어떤 고통과 고민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을 때 한 잔의 술로 고통과 고민, 스트레스를 잊을 수만 있다면 술은 명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술은 숙성상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마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양주소비에 있어 세계 1위로 여러분의 남편, 아들이 바로 지금 그런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문화에서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 가를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임상병리과 과장 김동렬



'글루코사민' 이 무엇인가요?

요즘 들어 환자들에게서 '글루코사민'에 대해 질문을 받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글루코사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세포나 그 생산물을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연골 대사과정을 정상화하고 연골 물질을 생성, 보호,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근본적으로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물질이지만 그간 진행된 조사(Arch Intern med 2002;162:2113-23, Menopause 2004;11(2):138-43)에 의하면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나 관절의 퇴행성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외부 투여에 의해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통증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기에 '글루코사민'을 투여해도 일정 기간은 통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현재 약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품질이나 정확한 함량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황산 콘드로이틴, SAME, MSM, Pentosan polysulfate 등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적은 지식이었지만 '지피(知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차피 동행해야 할 질병이라면 함께 해도 좋을 만큼 잘 다스릴 수 있는 벗이 되기를 바란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32년 전 Z로부터 토지 80평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M문중이 나타나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인데도 Z이 자기소유로 명의를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M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A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부동산매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할 뿐이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3.22. 90다49797).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례를 보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간접점유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다만,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94다28468, 95다2424, 94다38628).

즉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3.8. 95다43866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52)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하여

Q 전17살 학생입니다. 전 또래의 여자 친구가 있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 고민은 아직 미성년자 여서입니다.

A 왜 미성년자는 성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A 성 관계를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고민이시지요? 미성년자의 사랑이라고 해서 미성숙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사랑보다 더 진지하고 진실 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성관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될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 관계를 얘기 할 때 식욕과 비교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배고픈 것은 결코 참는 처연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욕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관계를 참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지자면 성관계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위 행위라든지 운동, 기타의 다른 방법 등으로 성욕을 분출시키는 이유가 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닌 사회윤리 때문일까요?

이것은 미성년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20살 또는 그 보다 더 많이 먹어도 성관계 후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걸리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 (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희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정리함에 따라 폐쇄되는 사업부의 직원들 일부를 두둑이 정리하고 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시 법정 퇴직금외에 명예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명예 퇴직금에 대하여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기업회계상 명예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퇴직금과는 다름

니다. 명예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퇴직금 추계액의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은 결산시점에서 계상해 놓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말고 지급시점에서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도 최근까지 명예 퇴직금을 일반퇴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

던 것을 2005. 5. 2 서면2답의 유권해석에서 일반퇴직금과는 별개로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의 해석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손급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5월의 유권해석은 법인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변경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해석은 국제심판례와 동일한 한 취지이고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일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반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양쪽 모두를 충족하게 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 믿을 수 있는 식품

엄마의 손맛, 맛과 영양에 한민족 정서까지!!!

승화식품에서 Seung Wha Food.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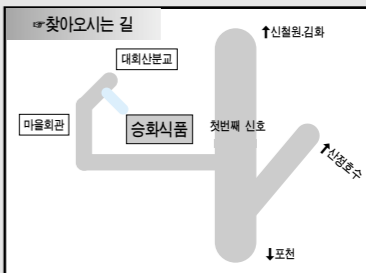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택곤



- ◆2002.11.11 농업인의날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 ◆2002.11.24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 수상
- ◆2003.5.14~18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 ◆2003.6.12~15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 ◆2003.10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 ◆2004.5 하이 서울 참가

- ◆연혁
- 1984.3.10 승화식품 설립
- 1986.3.30 5개 품목 생산
- 1993.11.12 9개 품목 추가생산
- 1996.3.30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 1996.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 1996.6.18 경기도 포천 공장 완공
- 2000.4.7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22 TEL : 02-960-6041 FAX : 02-960-1282  
포천공장 :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309 TEL : 031-535-6626~7 FAX : 031-535-6626